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28호 2017. 7. 14(금)

조례

- 남원시 조례 제1354호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남원시 조례 제1355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17
- 남원시 조례 제1356호 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 남원시 조례 제1357호 남원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3
- 남원시 조례 제1358호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 47
- 남원시 조례 제1359호 남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51
- 남원시 조례 제1360호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54
- 남원시 조례 제1361호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 70

규칙

- 남원시 규칙 제611호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76

고시

- 남원시 고시 제2017 - 84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84
- 남원시 고시 제2017 - 8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85

공고

- 남원시 공고 제979호 공시송달공고(2017년 4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 93
- 남원시 공고 제980호 공시송달공고(2017년 6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 95
- 남원시 공고 제994호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고 ----- 97

회 람										
--------	--	--	--	--	--	--	--	--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7월 14일

남원시 조례 제 1354 호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꾀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안”이라 함은 시민 또는 공무원이 시장”을 “제안”이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남원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고안으로서”를 “고안으로”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같은 호 중 “도에”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로 한다.

제5조 중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을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명기하여”를 “명확하게 적어”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 부시장, 총무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

2. 위촉직 : 지역 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가.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⑪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안제도”를 “시장은 제안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을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수”를 “수 있으며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불채택제안”을 “제안의 채택여부 및 불채택제안”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 “판단함에 있어서”를 “판단할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등”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요된”을 “드는”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6조 중 “제25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25조에 따라”로, “시행하고자 하는”을 “시행하려는”으로 한다.

제17조 중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시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로, “도에”를 “도지사에게”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안자에 대하여”를 “제안자에게”로, “수여하며”를 “수여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9조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장은”으로, “제안자에 대하여”를 “제안자에게”로, “의하여”를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시장은 제2항”으로, “심사위원은”을 “심사위원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시장은 제13조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안에 대하여는”을 “제안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안”을 “시장은 제안”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대하여 포상”을 “포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을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8조의 규정”을 “제2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을 “지급기준은”으로 한다.

제22조 중 “제안이”를 “시장은 제안이”로, “퇴직하거나”를 “퇴직하거나”로 한다.

제23조 중 “등의 필요에 의하여”를 “등 필요에 따라”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을 “경우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에 대하여는”을 “등은”으로 한다.

제25조 중 “제안에 대하여는”을 각각 “제안은”으로 한다.

제29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하여 시민과 남원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꾀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2조(적용범위) ----- ----- ----- ----- 따른다.</p>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3조(용어의 정의) ----- ----- 뜻은 ----- -----.</p>
<p>1. “제안”이라 함은 시민 또는 공무원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라. (생략)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p>	<p>1. “제안”이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남원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고안으로-----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p>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바.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
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
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
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
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
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
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
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
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시
장이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도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

바. 그 밖에 -----

2. -----이란 -----

-----.

3. -----이란 -----

-----.

4. -----이란 -----

-----.

5. -----이란 -----

-----.

6. -----이란 -----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

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
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② (생략)

③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
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
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
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
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
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

----- 적어야 -----.

제7조(제안의 접수) ① ----- 제4
조-----

-----.

② (현행과 같음)

③ ----- 따라 -----

----- 명확하게 적어 -----
-----.

제8조(제안의 보완) ① -----

-----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현행
과 같음)

<삭제>

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 5. (생략)

6.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③ -----
-----.

<삭제>

2.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 당연직 : 부시장, 총무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
- 2. 위촉직 : 지역 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가.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⑪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제안제도-----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부서의 장으로 구성 운영한다.

③ (생략)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1. 불채택제안의 재심 상정여부

2. ~ 5. (생략)

-----.

② ----- 위원장을 포함한 7명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인정하는 -----
----- 수 있으며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

<삭 제>

⑥ ----- 위원회-----.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불채택안--

2.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전문위원) ①·② (생략)

③ 제안내용이 전문성이 요구되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위촉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제안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심사기준 등) ① (생략)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

제11조(전문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2항에 따른 -----

-----.

제12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심사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판단할 경우에 -----

-----.

③ -----

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견조회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금상과 은상으로 채택 또는 우수하다고

----- 등 -----
-----.

제15조(의견조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따라 -----

③ -----
----- 드는 -----
- 범위 -----.

제1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
----- 제25
조에 따라 -----
----- 시행하려는 -----

제17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시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 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도에 추천할 수 있다.

제18조(제안의 등급) ① (생략)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정부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9조(인사상 특전)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한다.

제20조(부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채택된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 도
지사에게 -----.

제18조(제안의 등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안자에게-----
- 수여할 수 있으며,-----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인사상 특전) 시장은 -----

----- 제안자에게 -----
----- 따
른 -----
-----.

제20조(부상금의 지급) ① -----
-----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

-----.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에 대한 심사위원은 공모제안 모집부서에서 별도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 심사결과 창의성이 다소 미흡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 의결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기념품을 지급한다.

⑤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
----- 심사위원을 -----
-----.

④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
----- 제1항에 따른 -----

----- 제안은 -----

-----.

⑤ 시장은 제안-----

----- 범위-----
-----.

⑥ -----
----- 포상-----
-----.

제21조(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 3. (생략)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준은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2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3조(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21조(상여금 지급)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다음 ---

1. ~ 3. (현행과 같음)

② ----- 제28조-----

③ ----- 지급기 -----
준은 -----

제22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시장은 제안이 -----
퇴직하거나 -----

제23조(그 밖의 보상) -----
 ----- 등 필요에 따라 -----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4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공무원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25조(0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경우 예산의 범위 -----
----- .

제24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

----- 따른 -----
----- 따른

----- 따른 -----

② -----
----- 등은 -----

----- .

제25조(관리기간) ----- 제안은 -----

----- 제안은 -----
----- .

제29조(시행규칙) -----
----- 필요한 -----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7월 14일

남원시 조례 제 1355 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지역공동체의 성장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시민자치 실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전체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리 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나. 그 밖에 시민들이 경제·문화·생활기반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

2. “지역공동체 활성화”란 시민 간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시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나. 지역공동체의 생활환경 개선

다. 시민의 복지 향상 등 삶의 질 개선

라. 지역자원의 개발 및 지역문화 창달

마. 그 밖에 시민 상호작용 및 유대감·소속감 증진을 위한 활동

3. “지역공동체조직”이란 지역공동체의 시민 전체 또는 일부가 해당 지역공

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

4. “지역공동체활동”이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의 시민 또는 지역공동체조직이 수행하는 노력이나 활동을 말한다.
5. “지역자원”이란 전통, 문화, 역사, 자연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
6. “마을기업”이란 시민 또는 단체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7. “남원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사무 공간, 시민들과 지역공동체간 소통과 공유·협력을 위한 거점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민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자치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함.
2. 시민 협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함.
3. 시민과 시장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함.
4. 지역의 전통과 자연환경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함.

제4조(시민참여) 시민은 누구나 시민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활동 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한다.

② 지역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은 시민 전체 이익에 기여하고 시민 및 다른 지역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치 및 종교 활동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지역공동체조직 등은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 종교를 위한 교리전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

제7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

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 조사·발굴 및 연구 사업
3. 지역공동체 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교류 사업
4. 그 밖에 시민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지역공동체활동을 추진하려는 지역공동체조직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업공모) ① 시장은 읍·면·동별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되, 필요할 경우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 사업을 선택한 후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공모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신청 및 지원 절차 등) ① 지역공동체조직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 사업비 산출 기초 적정성 여부
3. 추진 주체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시의 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지역공동체조직은 사업 입안 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모든 과정에 다수의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④ 지역공동체조직이 사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전문가 등의 지원)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조사)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공동체조직에 대하여 추진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을 경우

제14조(형성재산의 사용)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분석 및 평가) 시장은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위원회

제16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의 정책 및 사업을 심의·의결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평가
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심사 선정
3. 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참여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시설물 및 물품 이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민사회발전 및 지역공동체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

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민소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공동체 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지역공동체 활동을 행하는 사람
3. 남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4. 시 관계 공무원 3명 이내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소통 업무담당자 되고 서기는 시민소통 업무담당자가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⑦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남원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22조(설치) 시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남원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및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
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분석·컨설팅
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5.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6.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관광·학술 활동 지원
7.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8.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과 지원
9. 마을기업 설립 및 농촌 활력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
10. 도시재생 기반시설 및 인프라, 시민 공동이용 공간 활성화
11. 센터의 공간을 활용한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센터의 구성)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조직을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력운용과 조직구성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5조(센터의 운영 등)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자율성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이하 “운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운영자를 선정하고 선정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운영자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6조(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시장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이용료 등)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시설 및 설비 이용료 등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 등은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센터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센터 운영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③ 운영자는 사무 인수·인계를 위탁 만료 1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2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운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조(위탁의 취소·해지 등) ①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또는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3.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었거나, 위탁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운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건전한 지역공동체 성장과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7월 14일

남원시 조례 제 1356 호

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그 구역은 별표와”를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의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을”을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으로 “언어”를 “받아”로 한다.

별표 1,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남원시 동·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② 남원시 운봉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리.통.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와 별표3을 각각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u>남원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명칭 및 구역) 남원시 읍·면·동의 <u>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u></p> <p><u><신 설></u></p> <p>제3조(명칭과 구역의 변경) <u>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조례로서 이를 정한다.</u></p>	<p><u>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u>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u> -----.</p> <p>제2조(명칭 및 구역) ① ----- ----- <u>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u></p> <p>② <u>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u></p> <p>제3조(명칭과 구역의 변경) <u>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을----- 받아-----</u> -----.</p>

[별표 1]

남원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제1항 관련]

읍·면·동명칭	관할구역
운봉읍	주촌, 덕산, 공안, 행정, 산덕, 동천, 북천, 서천, 용산, 준향, 장교, 권포, 임, 매표, 가산, 화수, 신기리 일원
주천면	주천, 배덕, 송치, 용담, 호기, 장안, 은송, 호경, 용궁, 고기, 덕치리 일원
수지면	남창, 초리, 산정, 유암, 호곡, 고평리 일원
송동면	신평, 송내, 사촌, 송상, 장국, 흑송, 송기, 장포, 영동, 연산, 양평, 두신, 세전리 일원
주생면	상동, 중동, 지당, 영천, 정송, 제천, 낙동, 내동, 도산리 일원
금지면	웅정, 입암, 서매, 방촌, 택내, 창산, 상신, 신월, 상귀, 귀석, 하도리 일원
대강면	풍산, 수홍, 옥택, 평촌, 입암, 송대, 강석, 사석, 방동, 월탄, 생암, 신덕, 방산리 일원
대산면	금성, 수덕, 대곡, 풍촌, 신계, 운교, 옥율, 길곡리 일원
사매면	서도, 계수, 인화, 화정, 대율, 월평, 오신, 관풍, 대신리 일원
덕과면	만도, 신양, 사율, 고정, 덕촌, 용산리 일원
보절면	서치, 괴양, 진기, 금다, 신평, 황벌, 도룡, 사촌, 성시리 일원
산동면	목동, 식련, 부절, 태평, 대기, 월석, 대상리 일원
이백면	초촌, 척문, 서곡, 내동, 남계, 강기, 양가, 평촌, 과립, 효기리 일원
인월면	중군, 인월, 서무, 취암, 건지, 유곡, 상우, 성산, 자래리 일원
아영면	아곡, 봉대, 인풍, 갈계, 청계, 월산, 성, 구상, 일대, 의지, 두락리 일원
산내면	중황, 백일, 대정, 장항, 입석, 내령, 부운, 덕동리 일원
동충동	동충동 일원
죽향동	죽향동 일원
하정동	하정동 일원
쌍교동	쌍교동 일원
천거동	천거동 일원
노암동	노암동 일원
신촌동	신촌동 일원
어현동	합과, 세현, 어은골, 독도랑골 일원
금동	금동 일원
조산동	서조산, 신조산, 동조산 일원
왕정동	왕정동 일원
신정동	새터, 아래정재, 윗정재 일원
화정동	화산당, 매골, 대정동, 시목동 일원
향교동	향교동 일원
용정동	구룡, 용갈, 신생, 박달 일원
광치동	광석, 율치 일원
내척동	내동, 미동, 보성, 재실 일원
산곡동	웅곡, 산성, 칠지, 산곡 일원
도통동	도통동 일원
월락동	월미, 낙현 일원
고죽동	황죽, 고산 일원
식정동	식정, 요천 일원
갈치동	상갈치, 중갈치, 하갈치 일원

[별표 2]

남원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제2항 관련)

읍·면별	리 명칭	관할구역
운봉읍	주촌리	주촌
	덕산리	덕산, 가장
	공안리	수철, 공안, 유평, 용은
	행정리	행정, 엄계
	산덕리	산덕, 삼산
	동천리	동상, 동하
	용산리	용산
	북천리	북천
	서천리	서상, 서남, 서하
	준향리	준향
	장교리	장교, 장동, 연동
	권포리	권포, 가동
	임리	임
	신기리	신기
	매요리	매요
	가산리	가산, 방현
	화수리	소석, 전촌, 비전, 화신
	주천면	주천리
배덕리		배촌, 덕촌
송치리		웅치, 중송, 하송
용담리		용담
호기리		호곡, 신기, 안곡
장안리		무수, 외평
은송리		행정, 내송
호경리		호경
용궁리		외용궁, 내용궁
고기리		내기, 고촌, 회덕, 노치
수지면	남창리	남창, 용강, 신평
	초리	초리, 서당
	산정리	등동, 가정, 마연, 산촌
	유암리	유촌, 포암, 갈촌
	호곡리	외호곡, 내호곡, 신덕
	고평리	양촌, 고정, 진곡, 마륜
송동면	신평리	신기, 백평
	송내리	송내
	사촌리	내사촌, 외사촌
	송상리	문치, 오촌, 원촌, 생촌
	장국리	부석, 태동, 동서내
	흑송리	안계, 척동
	송기리	우동, 부동
	장포리	장포
	영동리	영촌, 손동

	연산리	연산
	양평리	양평
	두신리	두곡, 신촌
	세전리	동양, 중상, 신산
주생면	상동리	상동, 부동
	중동리	중동
	지당리	대지, 소지, 효동
	정송리	정충, 반송
	영천리	영춘, 유매
	제천리	제천, 서만
	낙동리	낙동
	내동리	내동, 광촌
	도산리	상도, 도산
금지면	용정리	금정, 석정
	입암리	입동, 입서
	서매리	서재, 매촌
	방촌리	방촌
	택내리	택촌, 내기
	창산리	호산, 대성
	상신리	상신
	신월리	장승, 금평, 황구
	상귀리	상귀
	귀석리	귀석
	하도리	용진, 하도
대강면	풍산리	산촌, 곡촌, 양촌
	수흥리	수촌, 도곡
	옥택리	옥진, 택촌
	평촌리	평촌
	입암리	입암
	송대리	송내, 대치
	강석리	강석
	사석리	사촌1, 사촌2, 석촌
	방동리	편동, 양동
	월탄리	월산, 금탄
	생암리	광암, 생사
	신덕리	신기, 가덕
	방산리	방산
대산면	금성리	금강, 감성
	수덕리	노촌, 노산
	대곡리	하대, 상대
	풍촌리	감동, 독산
	신계리	신촌, 월계
	운교리	운교
	옥율리	옥진, 율정
	길곡리	왓길, 심곡
사매면	서도리	노봉, 수촌, 서촌
	계수리	수동, 계동

	인화리	인화
	화정리	화정
	대율리	대율
	월평리	수월, 손율, 덕평
	오신리	하신, 중신, 신촌, 오현
	관풍리	풍촌, 관촌, 세동
	대신리	상신, 대산
덕과면	만도리	만동, 도촌
	신양리	비촌, 양선, 작소
	사율리	사곡, 율천
	고정리	고정, 신정, 월평
	덕촌리	덕동, 수촌
	용산리	용산, 추산, 배산
보절면	서치리	부흥, 서당
	괴양리	개신, 양촌, 음촌
	진기리	진목, 내동, 신기
	금다리	금계, 다산
	신파리	하신, 상신, 파동, 중신
	항별리	은천, 별촌, 외항, 내항
	도룡리	도촌, 용평, 안평
	사촌리	사촌
	성시리	성남, 성북, 계월
산동면	목동리	목동
	식련리	식련
	부절리	부동, 부서, 중절
	태평리	이곡, 태평, 신평
	대기리	대촌, 등구, 평선
	월석리	월산, 석동
	대상리	대상, 상신
이백면	초촌리	오촌, 초동
	척문리	척동, 폐문
	서곡리	서동, 채곡, 문화
	내동리	내동, 외동
	남계리	계산, 남평, 산남
	강기리	내기, 강촌
	양가리	양강, 목가
	평촌리	평촌
	과립리	과리, 입촌
	효기리	효기, 효촌
인월면	중군리	중군
	인월리	구인월, 인월, 신인월, 월평
	서무리	서무, 계암, 사창, 동현, 신촌
	취암리	취암, 동무, 덕실
	건지리	외건, 내건, 지산
	유곡리	유곡, 도장, 성내
	상우리	상우, 하우
	성산리	성산, 용주, 장평

아영면	자래리	자래, 연실
	아곡리	아곡, 당동
	봉대리	봉대
	인풍리	외인, 내인, 매산
	갈계리	서갈, 동갈
	청계리	광평, 외지, 청계, 고인
	월산리	구지, 신지, 오산
	성리	상성, 하성
	구상리	구상, 송리
	일대리	부동, 일대
	의지리	서정, 율동, 의지
	두락리	두락, 이동
	산내면	중항리
백일리		백일, 원백일
대정리		중기, 대정, 매동
장항리		장항, 원천
입석리		입석, 삼화
내령리		내령
부운리		부운, 와운, 반선
덕동리		덕동, 달궁

※ 관할구역 란의 명칭은 행정리를 말함.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7월 14일

남원시 조례 제 1357 호

남원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1항 후단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생면 관할구역에 화정동 일부 지역을 편입하고, 신정동 관할구역에 주생면 상동리 일부 지역을 편입하며, 화정동 관할구역에 신정동 일부 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3과 같다.

④ 주천면 장안리 관할구역에 주천면 호경리 일부 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4와 같다.

제2조 제1항 후단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생면 상동리 관할구역 중 신정동에 편입한 주생면 상동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신정동 관할구역 중 화정동에 편입한 신정동 일부지역을 제외하며, 화정동 관할구역 중 주생면 상동리에 편입한 화정동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3과 같다.

④ 주천면 호경리 관할구역 중 주천면 장안리에 편입한 주천면 호경리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3,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3항과 제2조제3항은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는 별표와 같다.

② (생략)

<신설>

<신설>

---- 별표 1과 --.

② (현행과 같음)

③ 주생면 상동리 관할구역 중 신정동에 편입한 주생면 상동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신정동 관할구역 중 화정동에 편입한 신정동 일부지역을 제외하며, 화정동 관할구역 중 주생면 상동리에 편입한 화정동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3과 같다.

④ 주천면 호경리 관할구역 중 주천면 장안리에 편입한 주천면 호경리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3]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제1조제3항 및 제2조제3항 관련)

□ 남원시 신정동 일부 ⇒ 화정동으로 경계조정 / 2012. 4. 2.

연번	경계조정 전		경계조정 후		지목	면적	비고
	동	지번	동	지번			
합계						11,328	
1	신정동	408-1	화정동	856	대지	548	
2	신정동	408-5	화정동	857	창고	1,757	
3	신정동	408-6	화정동	858	답	271	
4	신정동	408-11	화정동	859	답	530	
5	신정동	408-16	화정동	860	답	210	
6	신정동	409-1	화정동	861	대지	456	
7	신정동	409-3	화정동	862	대지	529	
8	신정동	409-4	화정동	863	답	433	
9	신정동	410	화정동	864	대지	228	
10	신정동	410-1	화정동	865	대지	156	
11	신정동	410-2	화정동	866	대지	90	
12	신정동	410-3	화정동	867	대지	98	
13	신정동	410-4	화정동	868	대지	59	
14	신정동	417-1	화정동	869	답	152	
15	신정동	417-2	화정동	870	답	293	
16	신정동	417-3	화정동	871	전	221	
17	신정동	418-1	화정동	872	대지	381	
18	신정동	418-2	화정동	873	답	1,425	
19	신정동	418-3	화정동	874	전	212	
20	신정동	419-1	화정동	875	답	779	
21	신정동	815-2	화정동	876	도로	269	
22	신정동	817	화정동	877	하천	1,165	
23	신정동	817-1	화정동	878	하천	144	
24	신정동	817-2	화정동	879	하천	269	
25	신정동	817-3	화정동	880	하천	67	
26	신정동	817-4	화정동	881	하천	62	
27	신정동	817-5	화정동	882	하천	80	
28	신정동	818	화정동	883	도로	50	
29	신정동	815-8	화정동	884	도로	394	

□ 남원시 화정동 일부 ⇒ 주생면 상동리로 경계조정 / 2012. 4. 2.

연번	경계조정 전		경계조정 후			지목	면적	비고
	동	지번	면	리	지번			
합계							25,999	
1	화정동	171-2	주생면	상동리	914	도로	456	
2	화정동	171-3	주생면	상동리	915	도로	23	
3	화정동	171-4	주생면	상동리	916	도로	102	
4	화정동	171-5	주생면	상동리	917	답	103	
5	화정동	171-6	주생면	상동리	918	도로	26	
6	화정동	171-8	주생면	상동리	919	하천	49	
7	화정동	172-1	주생면	상동리	920	도로	417	
8	화정동	172-2	주생면	상동리	921	도로	169	
9	화정동	172-3	주생면	상동리	922	답	3,026	
10	화정동	172-4	주생면	상동리	923	하천	55	
11	화정동	173-2	주생면	상동리	924	도로	721	
12	화정동	173-4	주생면	상동리	925	답	1,385	
13	화정동	173-5	주생면	상동리	926	답	926	
14	화정동	173-6	주생면	상동리	927	도로	83	
15	화정동	174	주생면	상동리	928	답	1,607	
16	화정동	175-2	주생면	상동리	929	도로	258	
17	화정동	175-3	주생면	상동리	930	답	1,064	
18	화정동	175-5	주생면	상동리	931	도로	30	
19	화정동	175-7	주생면	상동리	932	답	7	
20	화정동	176	주생면	상동리	933	답	1,091	
21	화정동	177	주생면	상동리	934	답	1,435	
22	화정동	178-2	주생면	상동리	935	도로	430	
23	화정동	178-3	주생면	상동리	936	대지	1,875	
24	화정동	178-4	주생면	상동리	937	도로	7	
25	화정동	178-5	주생면	상동리	938	도로	76	
26	화정동	178-6	주생면	상동리	939	전	1,060	
27	화정동	178-7	주생면	상동리	940	도로	270	
28	화정동	178-8	주생면	상동리	941	전	16	
29	화정동	178-9	주생면	상동리	942	전	84	
30	화정동	179-2	주생면	상동리	943	도로	195	
31	화정동	179-3	주생면	상동리	944	답	726	
32	화정동	179-4	주생면	상동리	945	도로	17	
33	화정동	179-5	주생면	상동리	946	도로	40	
34	화정동	179-6	주생면	상동리	947	대지	37	
35	화정동	179-7	주생면	상동리	948	답	48	
36	화정동	182-2	주생면	상동리	949	도로	63	
37	화정동	182-3	주생면	상동리	950	도로	149	

38	화정동	183-2	주생면	상동리	951	도로	400	
39	화정동	183-3	주생면	상동리	952	도로	33	
40	화정동	752-2	주생면	상동리	953	도로	13	
41	화정동	752-3	주생면	상동리	954	도로	317	
42	화정동	752-4	주생면	상동리	955	도로	13	
43	화정동	752-5	주생면	상동리	956	도로	26	
44	화정동	752-6	주생면	상동리	957	도로	40	
45	화정동	752-7	주생면	상동리	958	도로	129	
46	화정동	752-8	주생면	상동리	959	전	3	
47	화정동	752-9	주생면	상동리	960	전	17	
48	화정동	752-10	주생면	상동리	961	대지	473	
49	화정동	753-1	주생면	상동리	962	잡종지	268	
50	화정동	753-2	주생면	상동리	963	도로	10	
51	화정동	754-2	주생면	상동리	964	도로	440	
52	화정동	754-3	주생면	상동리	965	답	2,969	
53	화정동	754-4	주생면	상동리	966	도로	13	
54	화정동	754-5	주생면	상동리	967	도로	76	
55	화정동	754-6	주생면	상동리	968	답	30	
56	화정동	777	주생면	상동리	969	도로	40	
57	화정동	784	주생면	상동리	970	도로	962	
58	화정동	산 94-7	주생면	상동리	산59	임야	221	
59	화정동	769-11	주생면	상동리	971	구거	727	
60	화정동	770-8	주생면	상동리	972	도로	23	
61	화정동	781-1	주생면	상동리	973	구거	630	

□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일부 ⇒ 신정동으로 경계조정 / 2012. 4. 2.

연번	경계조정 전			경계조정 후		지목	면적	비고
	면	리	지번	동	지번			
합계							72,890	
1	주생면	상동리	1	신정동	822	대지	116	
2	주생면	상동리	1-1	신정동	823	구거	7	
3	주생면	상동리	2-1	신정동	824	전	339	
4	주생면	상동리	2-2	신정동	825	전	79	
5	주생면	상동리	2-3	신정동	826	대지	173	
6	주생면	상동리	2-4	신정동	827	제방	38	
7	주생면	상동리	2-5	신정동	828	제방	159	
8	주생면	상동리	2-6	신정동	829	제방	19	
9	주생면	상동리	2-7	신정동	830	전	41	
10	주생면	상동리	2-8	신정동	831	전	41	
11	주생면	상동리	3-1	신정동	832	전	747	
12	주생면	상동리	3-2	신정동	833	답	225	
13	주생면	상동리	3-4	신정동	834	전	23	
14	주생면	상동리	4	신정동	835	답	1,074	
15	주생면	상동리	5	신정동	836	답	1,210	
16	주생면	상동리	6	신정동	837	답	1,064	
17	주생면	상동리	6-2	신정동	838	답	1,061	
18	주생면	상동리	7	신정동	839	답	4,413	
19	주생면	상동리	8	신정동	840	답	2,688	
20	주생면	상동리	9	신정동	841	답	1,121	
21	주생면	상동리	10	신정동	842	답	1,667	
22	주생면	상동리	11	신정동	843	답	1,233	
23	주생면	상동리	12	신정동	844	답	243	
24	주생면	상동리	14	신정동	845	답	300	
25	주생면	상동리	14-1	신정동	846	답	886	
26	주생면	상동리	15-1	신정동	847	답	2,840	
27	주생면	상동리	15-2	신정동	848	답	1,168	
28	주생면	상동리	15-3	신정동	849	답	1,081	
29	주생면	상동리	16	신정동	850	답	3,071	
30	주생면	상동리	16-2	신정동	851	답	182	
31	주생면	상동리	17	신정동	852	답	588	
32	주생면	상동리	17-2	신정동	853	전	30	
33	주생면	상동리	17-3	신정동	854	제방	248	
34	주생면	상동리	18	신정동	855	답	1,774	
35	주생면	상동리	18-1	신정동	856	제방	467	
36	주생면	상동리	19	신정동	857	답	1,071	
37	주생면	상동리	19-2	신정동	858	답	896	

38	주생면	상동리	20	신정동	859	답	909	
39	주생면	상동리	20-2	신정동	860	답	661	
40	주생면	상동리	20-3	신정동	861	답	1,504	
41	주생면	상동리	21	신정동	862	답	996	
42	주생면	상동리	22	신정동	863	답	787	
43	주생면	상동리	22-3	신정동	864	답	186	
44	주생면	상동리	69	신정동	865	답	53	
45	주생면	상동리	69-2	신정동	866	답	346	
46	주생면	상동리	69-5	신정동	867	답	20	
47	주생면	상동리	70	신정동	868	답	767	
48	주생면	상동리	71	신정동	869	답	1,517	
49	주생면	상동리	71-1	신정동	870	제방	221	
50	주생면	상동리	72-1	신정동	871	답	1,919	
51	주생면	상동리	72-2	신정동	872	대지	64	
52	주생면	상동리	77-1	신정동	873	답	17	
53	주생면	상동리	77-2	신정동	874	도로	145	
54	주생면	상동리	77-3	신정동	875	도로	1,031	
55	주생면	상동리	78-1	신정동	876	답	946	
56	주생면	상동리	78-3	신정동	877	도로	7	
57	주생면	상동리	78-5	신정동	878	제방	916	
58	주생면	상동리	79	신정동	879	제방	60	
59	주생면	상동리	301	신정동	880	답	340	
60	주생면	상동리	301-2	신정동	881	답	119	
61	주생면	상동리	301-3	신정동	882	답	122	
62	주생면	상동리	301-4	신정동	883	답	148	
63	주생면	상동리	302	신정동	884	답	962	
64	주생면	상동리	303	신정동	885	답	3,375	
65	주생면	상동리	304	신정동	886	답	3,736	
66	주생면	상동리	305	신정동	887	답	3,441	
67	주생면	상동리	709	신정동	888	구거	387	
68	주생면	상동리	710	신정동	889	도로	374	
69	주생면	상동리	714-3	신정동	890	구거	223	
70	주생면	상동리	714-4	신정동	891	구거	489	
71	주생면	상동리	716-2	신정동	892	도로	827	
72	주생면	상동리	717	신정동	893	하천	6,701	
73	주생면	상동리	717-1	신정동	894	제방	2,572	
74	주생면	상동리	3-5	신정동	895	구거	2,081	
75	주생면	상동리	712-3	신정동	896	도로	851	
76	주생면	상동리	718-2	신정동	897	도로	687	

[별표 4]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제3조제4항, 제4조제4항 관련]

연번	변경전 행정구역				변경후 행정구역				지목	면적(m ²)	비고
	읍면동	법정리	본번	부번	읍면동	법정리	본번	부번			
	계		196필지		계		196필지			111,175	
1	주천면	호경리	320		주천면	장안리	705		하천	522	
2	주천면	호경리	320	1	주천면	장안리	706		제방	14	
3	주천면	호경리	321		주천면	장안리	700		제방	17	
4	주천면	호경리	321	1	주천면	장안리	701		하천	49	
5	주천면	호경리	322		주천면	장안리	670		하천	529	
6	주천면	호경리	322	1	주천면	장안리	671		제방	28	
7	주천면	호경리	322	2	주천면	장안리	672		제방	8	
8	주천면	호경리	323	1	주천면	장안리	673		답	1,321	
9	주천면	호경리	323	2	주천면	장안리	687		도로	121	
10	주천면	호경리	323	3	주천면	장안리	688		답	115	
11	주천면	호경리	323	4	주천면	장안리	689		제방	167	
12	주천면	호경리	323	5	주천면	장안리	690		하천	152	
13	주천면	호경리	323	6	주천면	장안리	691		제방	40	
14	주천면	호경리	323	7	주천면	장안리	692		하천	103	
15	주천면	호경리	323	8	주천면	장안리	693		제방	160	
16	주천면	호경리	323	9	주천면	장안리	694		하천	297	
17	주천면	호경리	324	1	주천면	장안리	674		답	188	
18	주천면	호경리	324	2	주천면	장안리	686		도로	179	
19	주천면	호경리	324	3	주천면	장안리	695		답	1,227	
20	주천면	호경리	324	4	주천면	장안리	697		답	1,371	
21	주천면	호경리	324	5	주천면	장안리	698		제방	201	
22	주천면	호경리	324	6	주천면	장안리	699		제방	21	
23	주천면	호경리	325	1	주천면	장안리	675		답	628	
24	주천면	호경리	325	2	주천면	장안리	685		도로	284	
25	주천면	호경리	325	3	주천면	장안리	684		답	1,329	
26	주천면	호경리	326		주천면	장안리	683		답	2,410	
27	주천면	호경리	327	1	주천면	장안리	714		답	1,613	
28	주천면	호경리	327	2	주천면	장안리	679		대	707	
29	주천면	호경리	327	3	주천면	장안리	678		도로	202	
30	주천면	호경리	327	4	주천면	장안리	680		대	778	

31	주천면	호경리	327	5	주천면	장안리	682		대	1,245	
32	주천면	호경리	327	6	주천면	장안리	681		답	658	
33	주천면	호경리	328		주천면	장안리	713		답	1,127	
34	주천면	호경리	329		주천면	장안리	707		하천	165	
35	주천면	호경리	329	1	주천면	장안리	708		제방	56	
36	주천면	호경리	330		주천면	장안리	735		전	660	
37	주천면	호경리	330	1	주천면	장안리	709		제방	34	
38	주천면	호경리	330	2	주천면	장안리	733		전	495	
39	주천면	호경리	330	3	주천면	장안리	732		전	660	
40	주천면	호경리	330	4	주천면	장안리	712		전	359	
41	주천면	호경리	331	1	주천면	장안리	710		제방	88	
42	주천면	호경리	333	1	주천면	장안리	711		제방	5	
43	주천면	호경리	334		주천면	장안리	728		답	2,185	
44	주천면	호경리	335		주천면	장안리	729		대	460	
45	주천면	호경리	336	1	주천면	장안리	760		대	477	
46	주천면	호경리	336	2	주천면	장안리	757		도로	17	
47	주천면	호경리	336	3	주천면	장안리	758		도로	65	
48	주천면	호경리	336	4	주천면	장안리	759		대	232	
49	주천면	호경리	337		주천면	장안리	731		대	714	
50	주천면	호경리	338		주천면	장안리	726		답	549	
51	주천면	호경리	339		주천면	장안리	727		답	202	
52	주천면	호경리	340		주천면	장안리	724		답	516	
53	주천면	호경리	341		주천면	장안리	725		대	612	
54	주천면	호경리	342		주천면	장안리	761		대	449	
55	주천면	호경리	342	1	주천면	장안리	762		대	96	
56	주천면	호경리	343	1	주천면	장안리	791		도로	8	
57	주천면	호경리	343	2	주천면	장안리	788		전	30	
58	주천면	호경리	343	3	주천면	장안리	785		도로	324	
59	주천면	호경리	343	4	주천면	장안리	784		전	748	
60	주천면	호경리	343	5	주천면	장안리	787		도로	565	
61	주천면	호경리	343	6	주천면	장안리	786		전	50	
62	주천면	호경리	343	9	주천면	장안리	789		전	10	
63	주천면	호경리	343	10	주천면	장안리	783		도로	49	
64	주천면	호경리	343	11	주천면	장안리	790		도로	137	
65	주천면	호경리	344	1	주천면	장안리	779		임야	171	
66	주천면	호경리	344	2	주천면	장안리	780		임야	30	

67	주천면	호경리	344	3	주천면	장안리	781		도로	113	
68	주천면	호경리	344	4	주천면	장안리	782		임야	20	
69	주천면	호경리	345	1	주천면	장안리	768		잡종지	145	
70	주천면	호경리	345	2	주천면	장안리	763		하천	109	
71	주천면	호경리	345	3	주천면	장안리	771		도로	119	
72	주천면	호경리	345	4	주천면	장안리	774		답	27	
73	주천면	호경리	345	5	주천면	장안리	775		하천	3	
74	주천면	호경리	345	6	주천면	장안리	776		도로	179	
75	주천면	호경리	345	7	주천면	장안리	777		답	327	
76	주천면	호경리	345	8	주천면	장안리	772		도로	195	
77	주천면	호경리	345	9	주천면	장안리	770		잡종지	57	
78	주천면	호경리	345	10	주천면	장안리	769		하천	294	
79	주천면	호경리	345	11	주천면	장안리	773		답	132	
80	주천면	호경리	346		주천면	장안리	778		답	291	
81	주천면	호경리	347		주천면	장안리	803		답	337	
82	주천면	호경리	347	1	주천면	장안리	804		도로	18	
83	주천면	호경리	347	3	주천면	장안리	805		대	337	
84	주천면	호경리	348	1	주천면	장안리	809		답	512	
85	주천면	호경리	348	2	주천면	장안리	814		도로	36	
86	주천면	호경리	348	3	주천면	장안리	813		답	1,673	
87	주천면	호경리	348	4	주천면	장안리	811		대	496	
88	주천면	호경리	349	1	주천면	장안리	819		대	294	
89	주천면	호경리	349	2	주천면	장안리	818		도로	53	
90	주천면	호경리	350	1	주천면	장안리	834		대	221	
91	주천면	호경리	350	2	주천면	장안리	835		도로	13	
92	주천면	호경리	351		주천면	장안리	836		대	486	
93	주천면	호경리	351	1	주천면	장안리	842		전	2,085	
94	주천면	호경리	351	2	주천면	장안리	843		목장용지	915	
95	주천면	호경리	351	3	주천면	장안리	844		목장용지	952	
96	주천면	호경리	351	4	주천면	장안리	845		전	112	
97	주천면	호경리	352	1	주천면	장안리	837		대	360	
98	주천면	호경리	352	2	주천면	장안리	838		도로	36	
99	주천면	호경리	353	1	주천면	장안리	839		대	549	
100	주천면	호경리	353	2	주천면	장안리	840		도로	73	
101	주천면	호경리	354		주천면	장안리	841		대	264	
102	주천면	호경리	355	1	주천면	장안리	812		답	72	

103	주천면	호경리	355	2	주천면	장안리	816		도로	13	
104	주천면	호경리	355	3	주천면	장안리	815		도로	226	
105	주천면	호경리	355	4	주천면	장안리	817		답	102	
106	주천면	호경리	356		주천면	장안리	810		답	79	
107	주천면	호경리	357		주천면	장안리	801		전	1,014	
108	주천면	호경리	357	1	주천면	장안리	802		도로	41	
109	주천면	호경리	358		주천면	장안리	798		전	81	
110	주천면	호경리	358	1	주천면	장안리	799		대	579	
111	주천면	호경리	358	2	주천면	장안리	800		전	504	
112	주천면	호경리	359		주천면	장안리	797		대	611	
113	주천면	호경리	361		주천면	장안리	796		대	370	
114	주천면	호경리	362	1	주천면	장안리	793		도로	73	
115	주천면	호경리	362	2	주천면	장안리	792		도로	56	
116	주천면	호경리	362	3	주천면	장안리	794		도로	271	
117	주천면	호경리	362	4	주천면	장안리	795		전	169	
118	주천면	호경리	363	1	주천면	장안리	751		전	724	
119	주천면	호경리	363	2	주천면	장안리	756		도로	10	
120	주천면	호경리	363	3	주천면	장안리	754		전	83	
121	주천면	호경리	363	4	주천면	장안리	755		도로	3	
122	주천면	호경리	363	5	주천면	장안리	753		도로	12	
123	주천면	호경리	363	6	주천면	장안리	752		전	47	
124	주천면	호경리	364	1	주천면	장안리	743		전	72	
125	주천면	호경리	364	2	주천면	장안리	742		도로	142	
126	주천면	호경리	364	3	주천면	장안리	740		전	56	
127	주천면	호경리	364	4	주천면	장안리	746		도로	360	
128	주천면	호경리	364	5	주천면	장안리	749		전	726	
129	주천면	호경리	364	6	주천면	장안리	745		도로	287	
130	주천면	호경리	364	8	주천면	장안리	747		도로	79	
131	주천면	호경리	364	9	주천면	장안리	744		전	5	
132	주천면	호경리	364	10	주천면	장안리	741		도로	89	
133	주천면	호경리	364	11	주천면	장안리	737		전	4	
134	주천면	호경리	364	12	주천면	장안리	748		전	210	
135	주천면	호경리	365		주천면	장안리	750		대	264	
136	주천면	호경리	443		주천면	장안리	825		답	628	
137	주천면	호경리	444		주천면	장안리	826		대	354	
138	주천면	호경리	445		주천면	장안리	827		대	205	

139	주천면	호경리	446		주천면	장안리	828		대	251	
140	주천면	호경리	447		주천면	장안리	829		대	142	
141	주천면	호경리	448		주천면	장안리	830		대	199	
142	주천면	호경리	448	1	주천면	장안리	831		대	475	
143	주천면	호경리	449		주천면	장안리	833		대	340	
144	주천면	호경리	450		주천면	장안리	832		대	621	
145	주천면	호경리	451	1	주천면	장안리	821		답	1,266	
146	주천면	호경리	451	2	주천면	장안리	820		도로	7	
147	주천면	호경리	451	3	주천면	장안리	822		도로	13	
148	주천면	호경리	452		주천면	장안리	823		답	188	
149	주천면	호경리	453		주천면	장안리	824		답	165	
150	주천면	호경리	454		주천면	장안리	808		임야	317	
151	주천면	호경리	455		주천면	장안리	806		대	330	
152	주천면	호경리	455	1	주천면	장안리	807		답	330	
153	주천면	호경리	456	1	주천면	장안리	764		하천	50	
154	주천면	호경리	456	2	주천면	장안리	767		하천	10	
155	주천면	호경리	456	3	주천면	장안리	765		하천	115	
156	주천면	호경리	456	4	주천면	장안리	766		하천	47	
157	주천면	호경리	457		주천면	장안리	723		답	456	
158	주천면	호경리	458		주천면	장안리	717		하천	292	
159	주천면	호경리	458	1	주천면	장안리	718		하천	73	
160	주천면	호경리	458	2	주천면	장안리	719		하천	111	
161	주천면	호경리	459		주천면	장안리	720		하천	169	
162	주천면	호경리	460		주천면	장안리	721		하천	50	
163	주천면	호경리	461		주천면	장안리	667		답	235	
164	주천면	호경리	461	1	주천면	장안리	668		제방	157	
165	주천면	호경리	461	2	주천면	장안리	669		하천	120	
166	주천면	호경리	470		주천면	장안리	715		하천	6,497	
167	주천면	호경리	470	2	주천면	장안리	665		제방	284	
168	주천면	호경리	470	5	주천면	장안리	704		제방	1,566	
169	주천면	호경리	470	6	주천면	장안리	730		하천	357	
170	주천면	호경리	470	22	주천면	장안리	738		답	75	
171	주천면	호경리	470	35	주천면	장안리	666		하천	3,088	
172	주천면	호경리	470	38	주천면	장안리	676		하천	168	
173	주천면	호경리	470	39	주천면	장안리	677		하천	484	
174	주천면	호경리	470	41	주천면	장안리	716		하천	65	

175	주천면	호경리	470	47	주천면	장안리	734		하천	441	
176	주천면	호경리	470	48	주천면	장안리	739		하천	211	
177	주천면	호경리	470	49	주천면	장안리	736		답	92	
178	주천면	호경리	490		주천면	장안리	702		도로	187	
179	주천면	호경리	490	1	주천면	장안리	703		제방	277	
180	주천면	호경리	490	2	주천면	장안리	696		하천	210	
181	주천면	호경리	492		주천면	장안리	722		도로	3,311	
182	주천면	호경리	산59		주천면	장안리	산42		임야	10,345	
183	주천면	호경리	산59	1	주천면	장안리	산39		임야	68	
184	주천면	호경리	산60		주천면	장안리	산44		임야	4,661	
185	주천면	호경리	산61		주천면	장안리	산30		임야	1,388	
186	주천면	호경리	산62		주천면	장안리	산31		임야	11,937	
187	주천면	호경리	산62	1	주천면	장안리	산32		임야	768	
188	주천면	호경리	산62	2	주천면	장안리	산38		임야	265	
189	주천면	호경리	산62	3	주천면	장안리	산33		임야	1,708	
190	주천면	호경리	산63		주천면	장안리	산34		임야	1,388	
191	주천면	호경리	산64		주천면	장안리	산35		임야	2,248	
192	주천면	호경리	산65	2	주천면	장안리	산36		임야	2,688	
193	주천면	호경리	산65	3	주천면	장안리	산37		임야	6	
194	주천면	호경리	산65	4	주천면	장안리	산40		임야	158	
195	주천면	호경리	산65	5	주천면	장안리	산41		임야	123	
196	주천면	호경리	산66		주천면	장안리	산43		구거	99	

○ **리간 경계조정 : 주천면 호경리 → 주천면 장안리**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7월 14일

남원시 조례 제 1358 호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남원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부분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 을 “5년” 으로 하고, “2년” 을 “3년” 으로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1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4조에 따라 이 조례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법 제177조의2제1항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단, 제9조에 따른 감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 처리와 관련한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7월 14일

남원시 조례 제 1359 호

남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남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남원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 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재난 업무담당 국장·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관계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민방위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7월 14일

남원시 조례 제 1360 호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 관광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지리산허브밸리(이하 “허브밸리”라 한다)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운봉읍 바래봉길 211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브밸리”란 지리산 바래봉 인근에 지리산 자생식물과 각종 허브를 이용하여 조성한 공원을 말한다.
2. “시설사용”이란 관람구역 입장·주차장 내 주차·체험시설이용 이외의 다른 사항으로 허브밸리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제2호의 시설사용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장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허브밸리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② 허브밸리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허브밸리 관련 축제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휴장하지 않는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외) 및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의 다음날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임시 휴장할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허브밸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장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부 지역에 대해 진입 또는 접근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홈페이지 또는 시설입구 등에 그 사유를 적어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시간) ① 허브밸리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 09:00 ~ 18:00

2. 11월 ~ 2월 : 09:00 ~ 17:00

② 입장시간은 관람시간의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 ① 시장은 허브밸리의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려는 사람(이하 “관람객”이라 한다)에게는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 환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허브밸리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입장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원칙으로 하되, 전산발매체계를 활용한 매표일 경우에는 형식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점검 등의 기간 중에는 다른 형식의 입장권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입장료·각종 시설이용자 준수사항 등은 일반시민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객 준수사항) ① 시장은 관람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지물품 보관, 퇴장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음주 및 취사 행위, 환경오염 행위

3. 관람객을 상대로 판매·구걸·행상 행위

4.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행위
5. 그 밖에 제한이 필요한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한 물품은 소지자가 퇴장할 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제8조(주차료 징수) ① 허브밸리 주차장 이용자에게는 별표 4에 따라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료 감면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허브밸리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차료 산정을 위한 시간은 주차장 입차 때와 출차 때에 차량번호 인식카메라에 촬영된 시각의 시간으로 한다.

③ 시설물의 점검 등의 기간 중에는 다른 형식의 주차권과 정산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등) ①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 내의 안내표지 및 주차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하며, 자동차 관리 및 물품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출차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행위
2.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주차장 내의 각종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10조(주차장 이용 관련 손해배상) ①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과 타 차량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이 배상하여야 하며, 주차장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 신청 절차 등) ① 시설사용 신청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서 또는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사용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허가 여부를 접수일 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일 1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사용 신청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문화행사, 공연, 전시 행사
3. 관내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의 행사

제12조(시설사용료) ①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신청자에게 별표 6과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 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신청자 명의로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잘못 입금한 사람에게는 10일 이내(주말·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카드가맹점의 취소절차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관리·운영에 부적합하거나 긴급한 보수가 필요할 경우

② 시장은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시설사용자의 구조변경) 시설사용자가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구조변경은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은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양도 금지) 시설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7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허브밸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등의 판매점
2. 식당, 매점, 간이휴게실 등 편의시설
3.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18조(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시장은 허브밸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 체험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장 위탁 운영

제19조(위탁) 시장은 허브밸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허브밸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허브밸리를 수탁 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선정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에 선정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22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위·수탁자와 그 관련 사항
2. 위·수탁 기간 및 시설
3. 수탁자의 권리·의무와 준수사항
4. 협약 위반 시 조치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수탁자의 권리·의무 및 행위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등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2. 수탁사무의 처리 및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할 의무
3. 허브밸리를 수탁함에 있어 각종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
4. 수탁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보수 의무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3. 수탁 권한의 양도나 다시 빌려주는 행위
4.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24조(민·형사상 책임 등) ① 수탁자의 의무소홀 또는 제3자로 인한 시설물 등과 재산의 파손·분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허브밸리를 수탁함에 있어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시장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성실한 조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을 상주(常住)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3항의 평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의무 및 행위제한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기능을 못한 경우

3. 그 밖의 공익상 이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장 남원시 허브밸리 운영위원회

제2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허브밸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허브밸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허브밸리의 관리·운영,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허브밸리 수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등

제2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허브·식물·조경 관련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광·경영·회계 관련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0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3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또는 품의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허브밸리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할 경우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1. 위원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2.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제3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허브복합토피아관 민간위탁관리 민간투자자 모집공고」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그에 따른 위·수탁 사항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별표 1]

입 장 료 (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어 른	6,000원	4,000원	○ 개인 -어 른 : 아래의 개인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만 19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인 사람 -청소년 : 만 13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까지의 사람과 중·고등학생 -군 인 : 부사관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으로서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어르신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어린이 : 만 6세 이상부터 만 13세 미만까지의 사람과 초등학생 -영유아 :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미만까지의 사람 ○ 단체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에 한정함(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무료)
청소년 군 인	4,000원	3,000원	
어르신 어린이	2,000원	1,500원	
영유아	무 료		

[별표 2]

입장료 감면기준 (제6조제1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또는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하는 사람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만 2세 이상부터 만 13세 미만까지의 사람과 초등학생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 및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이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애국지사상 상이등급 1급자는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을 소지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유공자증 및 민주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이 경우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자는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공무수행 및 국가 또는 시가 주관·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석을 위한 입장객 ○ 남원시민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주민등록 등(초)본을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원시의 다른 관광지와 연계 협약을 체결한 경우 (3일 이내 입장권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역 관광지와 연계 협약을 체결한 경우 (3일 이내 입장권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비율을 따로 정함

※ 비고

1. 감면대상자의 감면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100% 감면대상자도 반드시 무료입장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3. 둘 이상의 감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요율이 높은 것으로 하나만을 적용한다.

[별표 3]

입장료 환불기준 (제6조제1항 관련)

환 불 대 상	환 불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의 귀책사유로 관람할 수 없을 경우 ○ 입장하기 전에 구매자의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입장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100%

[별표 4]

주 차 료 (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미만) 화물자동차(총중량 2.5톤 미만)	그 밖의 자동차
입차 후 5시간 이내로서 - 최초 20분 이내 - 기본 : 최초 20분 초과 50분 이내 - 추가 : 매 10분 이내	무 료 1,000원 200원 추가	무 료 2,000원 400원 추가
5시간 초과 ~ 24시간 이내	6,000원	12,000원

※ 상기 요금은 입차 시간 기준이며 24시간마다 상기 요금을 반복 적용한다.

[별표 5]

주차료 감면기준 (제8조제1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차량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공용) 차량 ○ 언론기관 차량 중 취재 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에 기재된 사람)이 운전 또는 동승하는 차량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가 운전 또는 동승한 차량 ○ 출차 당일에 해당하는 허브벨리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단, 남원시민은 제외) ○ 그 밖에 행사 또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거나 인식표를 부착하고 출입하는 차량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차량 ○ 저공해 자동차(「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단, 개소당 2시간 이내에 한정한다) 	50%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비율을 따로 정함

※ 비고

1. 감면대상자의 감면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둘 이상의 감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요율이 높은 것으로 하나만을 적용한다.

[별표 6]

시설사용료 (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원형광장 무대	30,000원/시간	1. 개장시간 내에 한정함 2. 전기시설 이용요금 포함
소공연장 무대	10,000원/시간	1. 개장시간 내에 한정함 2. 전기시설 이용요금 포함
그 밖의 시설 중 시장이 이용을 인정하는 시설	사용면적(m ²)×개별공시지가(원/m ²)×50/1000×사용일수/365	1. 도지에 한정함 2. 개장시간 내에 한정함 3. 전기시설 이용요금 포함되 지 않았으며 별도 협의

[별표 7]

시설사용료 환불기준 (제12조제3항 관련)

구 분	위약 및 배상, 환불 기준	
예약자의 귀 책사유에 따 른 예약 취소	사용일 5일 전 취소	시설사용료 전액 환불
	사용일 2 ~ 4일 전 취소	시설사용료의 10% 공제 후 나머지 금액 환 불
	사용일 1일 전 취소	시설사용료의 20% 공제 후 나머지 금액 환 불
	사용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30% 공제 후 나머지 금액 환 불
시장의 귀책 사유에 따른 예약 취소	사용일 5일 전 취소	시설사용료 전액 환불
	사용일 2 ~ 4일 전 취소	시설사용료 전액 환불과 10% 배상
	사용일 1일 전 취소	시설사용료 전액 환불과 20% 배상
	사용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시설사용료 전액 환불과 30% 배상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 용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예약한 시설 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시설사용료 전액 환불	

[별지 제1호 서식]

입 장 권 (제6조제2항 관련)

(앞 면)

<p>일련번호 A D M I S S I O N T I C K E T 입 장 권 (영수증)</p> <p><u>지리산허브밸리</u></p>	<p>『지리산허브밸리 사진』</p>	<p>일련번호 A D M I S S I O N T I C K E T 입 장 권 (수 표)</p>
남 원 시 장 (직 인)		

(뒷 면)

<p>『지리산허브밸리 CI』</p> <p><u>지리산허브밸리</u></p>	<p>『지리산허브밸리 안내도』</p> <p>※ 본 입장권의 효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일 허브밸리 입장에 한정 2. 당일 입장권에 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브밸리 주차장 이용 시 : 주차료 무료 (단, 남원시민은 제외) 3. 3일 이내 입장권에 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체결된 시 다른 관광지 이용 시 : 입장료 100분의 50 할인 - 협약 체결된 타 지역 관광지 이용 시 : 입장료 100분의 20 할인 <p>남원시청 원예허브과 (55717) 전북 남원시 운봉읍 바래봉길 209</p> <p>Tel 063-620-4891 FAX 063-620-6745</p>	
---	---	--

[별지 제2호 서식]

지리산허브밸리 시설사용(변경)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법인·단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동전화) 생년월일 (법인·단체번호)	
사용내역 (변경내역)	사용시설 (변경시설)			
	사용일시 (변경일시)			
	사용목적			
그 밖의 시설 등				
<p>「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리산허브밸리 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주소(법인·단체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p> <p>남원시장 귀하</p>				

[별지 제3호 서식]

지리산허브밸리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이동전화)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단체번호)	
시 설 명				
<p>「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리산허브밸리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주소(법인·단체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p> <p>남원시장 귀하</p>				
붙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1부.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1부.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7월 14일

남원시 조례 제 1361 호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원 생태관광 숙박시설(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 및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1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숙박시설과 캠핑장의 숙박 및 부대시설 전부를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주중과 주말 및 공휴일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가. 주 중 :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 나. 주 말 :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공휴일 전날
 - 다.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4. “관리자”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자(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를 말한다.

제2장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숙박시설 및 캠핑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5조(운영 및 시설 이용시간) ① 숙박시설 및 캠핑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② 시설의 이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한다.

제6조(시설이용료 등) ①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별표 1의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시설 예약 및 이용료의 납부) 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당일 현장 예약자는 예외로 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의 예약신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단, 이용예정일 전일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예약일)에 관리자가 지정한 계좌로 시설이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당일 현장 예약자는 시설이용료 전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입금 또는 납부와 동시에 시설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설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이용료의 환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환불
2. 이용일 5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하였을 경우 : 전액 환불
3.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하였을 경우 : 80퍼센트 환불
4. 이용일 1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환불
5. 이용 당일 취소 및 이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미 환불

② 환불은 예약취소일 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에게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입

장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에 따른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자는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멸실·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轉貸)금지) 이용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2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숙박시설 및 캠핑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장 위탁운영

제13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수탁자는 숙박시설 및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수탁사무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

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및 행위제한)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등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2. 수탁사무의 처리 및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할 의무
3. 시설운영에 따른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
4. 수탁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보수 의무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탁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시장의 승인 없이 숙박시설 및 캠핑장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4. 수탁 권한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는 행위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의 관리·운영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의무 및 행위제한 등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법인의 해산,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관리·운영 기능을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
4.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5. 그 밖의 공익상 이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이용료 (제6조 관련)

구분	기준	운영 실수	기준 인원	이용료(원)		비고
				주중	주말	
숙박시설	커플실	4실	2명	80,000	100,000	
	가족실	1실	4명	100,000	120,000	
	단체실	1실	8명	200,000	220,000	
캠핑장	면	30면		20,000	20,000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7월 14일

남원시 규칙 제 611 호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기타 제안제도”를 “그 밖에 제안제도”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를 “따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인터넷에 의하여”를 “인터넷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자료로서”를 “자료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첨부자료”를 “붙임자료”로 한다.

제5조 중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심사자는 조례 제13조에 따른”으로, “결정시에 심사자는”을 “결정시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을 “제14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으로, “별표1·별표2”를 “별표 1·별표 2”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들어 재심 상정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을 “들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 중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를 “심사부서”로, “지체없이 이를”을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채택제안을 지체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채택된”을 “심사부서의 장은 채택된”으로,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을 “경우에는”으로, “첨부한”을 “붙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른”으로,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않다면”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의함”을 “따름”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7호 서식”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의하여”를 “따라 서”로 한다.

제11조 제2항 중 “말”을 “31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 중 “채택제안에 대하여는”을 “채택제안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요된”을 “드는”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안정보”를 “시장은 제안정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u>하여 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필요한</u> ----- ----- .</p>
<p>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업 무담당 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및 <u>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u> 한 사항을 관장한다.</p>	<p>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 ----- ----- <u>그 밖에</u> <u>제안제도</u>----- ----- .</p>
<p>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아이디 어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u>의하여</u>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FAX)·인터넷을 이용 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 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 <u>에는</u> 별지 제3호 서식에 <u>의한</u> <u>접수대장에 기재하고</u>, 별지 제4</p>	<p>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 ----- ----- ----- ----- ----- <u>따라</u> ----- ----- . ----- ----- ----- ----- ----- .</p> <p>② ----- <u>경우에</u> <u>는</u> ----- <u>다른 접수</u> <u>대장에 기록하고</u>-----</p>

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 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 결정시에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조례

-- 따른 -----

-. -----

인터넷으로 -----

-. -----

③ -----

경우에는 -----

붙여야 -----

----- 경우에는 -----

----- 자료로 -----

-----.

④ ----- 붙임자료-----

-----.

제5조(심사기준 등) 심사자는 조
례 제13조에 따른 -----

----- 결정

시에는 -----

-----.

제6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은 관계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별표1·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③ (생략)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실무위원회에서 관계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재심 상정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제14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

--- 별표 1·별표 2-----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

- 제16조에 따라 -----

----- 들어 -----

② ----- 따라 -----

----- 별

표 2-----.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심사부서의 장은-----

-----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채택제안을 지체없이 ----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다.

② (생략)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
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
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
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
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 실시
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
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
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
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
록 할 수 있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
법)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의 평
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사부서의 장은 채택된 ---
----- 경우에는 -----

----- 불힌 -----

-----.

④ 제3항에 따른 -----

----- 않
다면 -----

-----.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
법) ① -----

----- 따름 -----
----- 해당 -

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
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여
야 하며,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
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3조에 의
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 실시평
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생략)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생
략)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
- 별지 제7호 서식-----

----- 해당 -----

--- 따라서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① (현
행과 같음)

② ----- 31
일-----

-----.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① ----

----- 따라 -----
-----.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결정 일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제16조(제안업무처리)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
----- 범위
-----.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
채택제안은 -----
-----.

----- 드는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제안업무처리) 시장은 제
안정보-----
-----.

남원시 고시 제2017 - 84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7년 07월 일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개간사업
2.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
3. 사 업 비 : 자력사업
4. 사업내용

토지의 소유자 (사업 시행자)		토 지 의 표 시						개간대상적 면 (m ²)
성 명	주 소	시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m ²)	
현**	전북 남원시 어현동 ***-***	남원	주천	송치	산101	임야	1,897	1,690

5. 사업기간 : 2017. 07. ~ 2018. 06. 30.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620-63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고시 제2017- 8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남 원 시 장

2017년 7월 21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사업명	위치	시설명	등급	노선 번호	사업구간	사업량	착수일	시행청	비고
							준공예정일		
롯데마트~의료원간 인도 정비공사	남원시 도통동 월락동 고속동	도로	대로	1-6	도통동 산10-13 ~ 월락동 산106-8	L=342m B=35m	2017. 7 2019. 12	남원시	
		도로	대로	1-9	월락동 산48-1 ~ 고속동 산58-3	L=464m B=35m	2017. 7 2019. 12	남원시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남원시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공사명 : 롯데마트 ~ 의료원간 인도 정비공사(대로 1-6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동	분할전	분할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세	
1	월락	산106-1	산106-1	도	7,401	1,935		건설부				
2	"	501-5	501-5	잡	28	2		국토교통부				
3	"	495-7	495-7	차	160	58		국토교통부				
4	"	493	493	도	4,185	85		건설부				
5	"	494-2	494-2	차	19	16		국토교통부				
6	"	495-11	495-11	대	133	83		국토교통부				
7	"	495-12	495-12	주	50	7		국토교통부				
8	도통	542	542	도	8,153	82		남원시				
9	"	산10-13	산10-13	도	3,771	442		건설부				
10	월락	500-1	500-1	도	462	14		건설부				
11	"	산106-8	산106-8	도	322	18		건설교통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공사명 : 롯데마트 ~ 의료원간 인도 정비공사(대로 1-9호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동	분할전	분할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세	
1	월락	산48-1		도	3,613	1,403		건설부				
2	"	산47-2	산47-9	임	70	70		남원시				
3	"	산46-2		도	1,793	1,793		건설교통부				
4	"	산46	산46-6	임	262	262중 1/5		남원시				
						262중 1/5		남원시				
						262중 1/5		남원시				
						262중 1/5		남원시				
						262중 1/5		남원시				
5	"	227-5	227-5	전	24	24		남원시				
6	"	산46-3		도	460	460		건설교통부				
7	"	622		구	915	228		농림축산식품부				
8	"	234-2		도	64	64		건설부				
9	"	233-2		도	188	188		건설부				
10	"	231-10		도	1	1		건설부				
11	"	231-11		도	69	69		건설부				
12	"	622-55		잡	6	6		남원시				
13	"	229-2		전	32	32		국토교통부				
14	"	산27-5		임	9	9		남원시				
15	"	230-2		전	75	75		건설부				
16	"	230-3		도	1,388	1,388		건설부				
17	"	산27-3		도	2,304	2,321		건설부				
18	"	산48-8		임	199	2		국토교통부				
19	"	227-8	227-13	임	4	4		남원시				
20	"	227-6	227-12	대	34	34		남원시				
21	"	227-1	227-11	전	142	142		남원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동	분할전	분할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세	
22	"	227-4		도	996	996		건설교통부				
23	"	산46-4	산46-5	임	17	17		남원시				
24	"	226-4		도	359	174		건설교통부				
25	"	227-2		도	2,389	2,237		남원시				
26	"	228-1		도	476	459		남원시				
27	"	622-73		구	3,545	337		농수산부				
28	"	229-1		도	863	858		건설부				
29	"	198-3	198-11	대	40	40		남원시				
30	"	198-4		임	15	15		남원시				
31	"	198-7	198-14	임	15	15		남원시				
32	"	198-5	198-12	대	31	31		남원시				
33	"	198-5	198-13	대	31	31		남원시				
34	고죽	산58-3		도	2,746	1,965		건설부				
35	"	163-1		도	13	13		건설부				
36	"	160		도	2,088	29		건설교통부				
37	"	162-5	162-7	대	66	66	순천시 연남1길 33, 3층(조례동)	유한회사 대호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공사명 : 롯데마트 ~ 의료원간 인도 정비공사(대로 1-9호선)

번호	소재지(동)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 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명세	
1	월락	227-12	울타리		33.6	m		남원시				
			바닥포장	콘크리트 포장	290	m ²						
			자귀나무		3	주						
			팽나무		1	주						
			단풍나무		1	주						
			해당화		1	주						
			목련		1	주						
			장미나무		10	주						
			사과나무		5	주						
			모과나무		1	주						
			남천		1	주						
			참빛나무		1	주						
			이팝나무		2	주						
			회향목		6	주						
계			14건									
2	월락	산46-6	아로니아	관수설비 포함	105	주		남원시				
			부직포		332	m ²						
			밤나무		1	주						
			감나무		2	주						
			살구나무		1	주						
			유카		12	주						
계			6건									
3	월락	227-11	사무실	조립식	38	m ²	순천시팔마1길26 ..103동102호 (연향동,연향주공 아파트)	주기선 (오리온종 합축산)				
			가설창고		35	m ²						
			간판		2	식						
			동산이전 비		1	식						
계			4건									

번호	소재지 (동)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 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명세	
4	월락	산47-9	창고	브릭 스레트	39	m ²		남원시				
			사무실	조립식	60	m ²						
			동산이전 비		1	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186	주						
			조경석		1	식						
			팽나무		2	주						
			주목		21	주						
			백일홍		5	주						
			소나무		4	주						
			단풍나무		1	주						
			감나무		1	주						
계			11건									
5	월락	226-4	바닥포장	아스팔트	426	m ²		남원시				
			빗물 배수시설		53	m						
			소나무		1	주						
계			3건									
6	월락	227-2	바닥포장	아스팔트	265	m ²		남원시				
			간판		1	식						
계			2건									
7	월락	산27-3	바닥포장	아스팔트	203	m ²		남원시				
			간판		1	식						
계			2건									
8	월락	198-11 198-4 198-14	현관 출입구	판넬 유리	4.5	m ²		남원시				
			컨테이너 1		1	식						
			컨테이너 2		1	식						
			에어컨		1	식						
			컨테이너 기초	콘크리트	12	m ²						
			부직포 하우스		6	m ²						
			바닥포장	콘크리트	126	m ²						

번호	소재지 (동)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 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명세	
8			정화조		1	식						
			간판		3	식						
			철도침목		18	개						
			조경석		40	m						
			라일락 나무		1	주						
			목련		2	주						
			소나무		3	주						
			회향목		75	주						
			철쭉		45	주						
			주목		6	주						
			단풍나무		5	주						
			벚나무		3	주						
			이팝나무		1	주						
			향나무		1	주						
			개나리		40	주						
			두릅		20	주						
			황매화		5	주						
계			24건									
9	월락	198-5	사무실	철골 판넬	123	m ²		남원시				
			화장실	철골 판넬	3	m ²						
			바닥포장	콘크리트	570	m ²						
			소나무		3	주						
			느티나무		1	주						
			팡팡나무		1	주						
			참빛나무		1	주						
			철쭉		20	주						
계			9건									
10	월락	198-5	동산 이전비	건물부착간판 1식	1	식	남원시 충정로 348(월락동)	남원화물				
			간판		1	식						
계			2건									
11	월락	198-5	동산 이전비		1	식	남원시 충정로 348(월락동)	영천농원				
			간판		1	식						
계			2건									

번호	소재지 (동)	지번	물건명	상황 및 구조	편입 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명세	
12	월락	198-5	동산 이전비		1	식	남원시 총정로 348(월락동)	한영 종합개발				
계			1건									
13	월락	산27-3	콘테이너		1	식		남원시				
			간판		3	식						
계			2건									
14	고속	산58-3	진열장		47	m ²		남원시				
			동산 이전비	CCTV, 냉장고, 매 대, 진열상품등	1	식						
계			1건									
15	고속	산58-3	간판		1	식	순천시 연동남 1길 33, 3층(조례동)	조중근 로젠택배				
			바닥포장	아스팔트	341	m ²						
계			3건									
16	월락	산27-3	간판		1	식		남원시				
계			1건									

남원시 공고 제2017 - 979

공 시 송 달 공 고

2017년 4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감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14

남 원 시 장

1. 제 목 : 2017년 4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7. 14 ~ 2017. 7. 28.
3. 납부기한 : 2017. 7. 31
4. 공시송달내용

2017년 4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감등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2017년 4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단위:원)

납세자	납세자 번호	과 세 번 호	세액	송달사유	간주납기
지*산*약*영 농**법인	21****-*****	140003-2017-04-2-***-20	2,141,750	이사감	2017. 7. 31
농*회*법*인 자*연*곡*합 미*처*리*장	21****-*****	140003-2017-04-2-***-19	2,227,290	이사감	2017. 7. 31
성**업	21****-*****	140003-2017-04-2-***-18	756,210	이사감	2017. 7. 31
주*회*미*	21****-*****	140004-2017-04-2-***-130	311,640	폐문부재	2017. 7. 31
주*회*미*	21****-*****	140004-2017-04-2-***-129	13,190	폐문부재	2017. 7. 31
주*회*미*	21****-*****	140004-2017-04-2-***-128	17,370	폐문부재	2017. 7. 31

남원시 공고 제2017 - 980

공 시 송 달 공 고

2017년 6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14

남 원 시 장

1. 제 목 : 2017년 6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7. 14 ~ 2017. 7. 28.
3. 납부기한 : 2017. 7. 31
4. 공시송달내용

2017년 6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2017년 6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단위:원)

납세자	납세자 번호	과 세 번 호	세액	송달사유	간주납기
춘*향*그린* 육*공	21****-*****	140004-2017-06-2-***-284	164,320	수취인불명	2017. 7. 31
삼*지*이*	21****-*****	140003-2017-06-2-***-59	18,640	수취인불명	2017. 7. 31
유*회*천*의 *침	21****-*****	140003-2017-06-2-***-64	6,634,430	수취인불명	2017. 7. 31
주*건*	21****-*****	140004-2017-06-2-***-65	1,160,980	이사감	2017. 7. 31
유*회*엘*	21****-*****	140004-2017-06-2-***-75	375,970	폐문부재	2017. 7. 31
농*회*법*오 *목	21****-*****	140004-2017-06-2-***-76	1,699,840	폐문부재	2017. 7. 31
신*건*주*회 *	17****-*****	140004-2017-06-2-***-87	13,941,660	폐문부재	2017. 7. 31
농*회*법*굿 *투*	21****-*****	140004-2017-06-2-***-98	48,160	수취인불명	2017. 7. 31
세*건*(주)	18****-*****	140004-2017-06-2-***-120	1,124,550	폐문부재	2017. 7. 31

남원시 공고 제2017-994호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며 다자녀 출산 가정에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셋째이상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상향하고, 3년간 분할 지급하여 지속적인 관심으로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거주기간을 삭제함 (안 제3조제1항)
- 나. 종전의 산후조리지원금은 삭제함 (안 제3조제3항)
- 다. 다자녀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상향하고 지원 방법을 반영함. (안 제5조제1항)
- 셋째아 출산가정 : 500만원, 최초 신청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100만원씩 3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 1,000만원, 최초 신청시 4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8월 2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보건소 건강생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나. 의견 제출할 곳

우55766 /남원시 요천로 1285,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 출산지원담당

다. 의견 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063-631-5933), 이메일youme@korea.kr),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 출산지원담당 (☎063-620-79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
------------	------------------------------------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7. 7.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출산을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며 다자녀 출산 가정에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셋째이상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상향하고, 3년간 분할 지급하여 지속적인 관심으로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거주기간을 삭제함 (안 제3조제1항)
- 나. 종전의 산후조리지원금은 삭제함 (안 제3조제3항)
- 다. 다자녀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상향하고 지원 방법을 반영함. (안 제5조제1항)
- 셋째아 출산가정 : 500만원, 최초 신청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100만원씩 3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 1,000만원, 최초 신청시 4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7. 12. ~ 2017. 8. 2.(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2017. 7. 11)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산모와 신생아의 양육 및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출산지원금과 산후조리지원금”을 “가정을 축하하고 출산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출산지원금”을 “출산장려금”으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자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삭제.

제4조 제2호 중 “시·군으로”를 “시군구로”로 한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산장려금은 출생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첫째아 출산가정 : 5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
2. 둘째아 출산가정 : 10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
3. 셋째아 출산가정 : 500만원, 최초 신청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1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4.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 1,000만원이며, 최초 신청시 4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제5조 제2항 제2호 중 “지원 대상 가정의 입양아와 사망자녀도 자녀수에 산입”을

“시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하되 대상 가정의 사망자녀는 예외적으로 자녀수에 산입”으로 한다.

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읍·면·동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대상자에게는 신청 대상자임을 안내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 략)</p> <p>3.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u>산모와 신생아의 양육 및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출산지원금과 산후 조리지원금을 말한다.</u></p> <p>4.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가정을 축하하고 출산을 지원하는 금액</u>----- ----- -----.</p> <p>4. (현행과 같음)</p>
<p>제3조(지원 대상) ① <u>출산지원금</u>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u>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u></p> <p>② <u>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이 된다.</u> 다만 <u>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생등록 시 50퍼센트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나머지 50퍼센</u></p>	<p>제3조(지원 대상) ① <u>출산장려금</u> ----- ----- ----- <u>자녀</u>----- -----.</p> <p><삭 제></p>

트를 지원 받을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가정이 된다.

1. 2. (생략)

④ 산후조리지원금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의 산모(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생략)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제5조(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은 별표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③ ----- 제1항-----

-----.

1. 2. (현행과 같음)

④ 삭제.

제4조(지원 대상 제외) -----

-----.

1. (현행과 같음)
2. ----- 시군구로 -----

제5조(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은 출생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 1. 첫째아 출산가정 : 5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
- 2. 둘째아 출산가정 : 10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
- 3. 셋째아 출산가정 : 500만원, 최초 신청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100만원

② 출산장려금의 지원 시 기준이 되는 출생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생략)
- 2. 지원 대상 가정의 입양아와 사망자녀도 자녀수에 산입

3. (생략)

제6조(지원신청 절차 등) ①·② (생략)

③ 읍·면·동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거주자가 출산장려금의 50퍼센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후 1년이 경과 한 후 그 대상자에게 추가 신청 대상자임을 안내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추가신청서를 제출받아 시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

씩 3년간 분할 지급

4.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 1,000만원이며, 최초 신청시 4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② -----

-.

- 1. (현행과 같음)
- 2. 시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하되 대상 가정의 사망자녀는 예외적으로 자녀수에 산입

3.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읍·면·동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에게는 신청 대상자임을 안내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주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
다.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